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6. 3.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다산아트홀 운영 체계를 재단으로 전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유연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에게 최적화된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조례안 제4조 ~ 제12조)

나. 사용료 반환기준 구체화(조례안 제18조 및 규칙안 제3조)

다. 수탁기관(문화재단)의 탄력적 운영 기반 마련(조례안 제24조 ~ 제25조)

라. 회원제 및 감면 기준 정비(조례안 별표 2 및 별표 3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 참조)

다. 관련부서 : 문화예술과

라. 입법예고 : 2026. 1. 22. ~ 2026. 2. 11.(21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출범한 남양주문화재단이 다산아트홀을 수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수탁기관 운영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의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괄 삭제하였고, 대관 취소 시 사용료 반환 기준을 총 5단계로 세분화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금전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회원제와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다산아트홀 운영 체계 전환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여 관련 제도를 재편하고, 수탁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개선안으로 사료됨.

붙임1 관계법령

☑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붙임2 **비용추계 관련 자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다산아트홀의 공연기획 등을 심의하였던 운영심의회 조항을 삭제하고 그 역할을 재단이 담당하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연장의 공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남양주시 다산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남양주문화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다산아트홀을 현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운영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여 재량권을 부여하고, 회원제 운영 및 환불 규정 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비용은 없음.

4. 작성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